

유한산업(주) 상생협력을 위한 실천사항

1. 사전 협의 및 계약서 작성 원칙

- ① 충분한 협의 보장
- ② 납품단가, 납기, 품질조건 등 계약 주요사항은 사전에 상호 협의 후 결정
- ③ 일방적 통보식 계약체결 금지, 서면 계약 체결 의무화
- ④ 구두계약이 아닌 서면 계약서로 거래조건 명확히 문서화
- ⑤ 계약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
품목명, 수량, 단가, 납기, 결제조건, 기술자료 보호 조항 등 계약서 사본 제공
협력사에게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제공하며, 열람 요청 시 즉시 제공

2. 공정한 단가 결정 및 조정

- ① 원가·시세를 반영한 단가 산정
- ② 시장가격, 원자재 변동, 환율 등 반영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단가 결정
- ③ 일방적 단가 인하 금지
- ④ 납품 중 협력사의 동의 없이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거나 정산에서 차감하지 않음
- ⑤ 원가 상승 시 협의 절차 마련
- ⑥ 최저임금,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 요인 발생 시 단가 재조정 협의절차 운영

3. 납기 및 발주 관리

- ① 적정한 납기 설정
- ② 무리한 납기 요구로 인한 품질 저하, 근로자 과로, 불법파견 유발 방지
- ③ 생산 리드타임을 고려한 납기 설정
- ④ 긴급 발주 최소화 및 협의 운영
- ⑤ 긴급 주문 시 협력사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사전 협의 및 보상 방안 마련

4. 검사, 반품, 클레임 등 사후처리 기준 명확화

- ① 검사 기준 사전 협의
- ② 품질검사 기준은 계약 전에 협력사와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로 남김
- ③ 불합격 시 처리 절차 공정화
- ④ 불량 발생 시 협력사와 원인분석을 공동 수행하고 처리 방법 협의
- ⑤ 임의 반품 금지
- ⑥ 단순 재고 조정이나 사후 클레임 등을 이유로 협력사의 동의 없이 일방 반품 불가

5.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 보호

- ① 비밀유지계약 체결
- ② 협력사로부터 받은 도면, 사양서, 제조공정 등 기술자료에 대해 철저한 비밀 유지
- ③ 기술자료 유용 및 무단사용 금지
- ④ 협력사 기술을 내부 전용 또는 타 업체 제공 시에는 사전 동의 및 보상 필요

6. 대금 지급의 투명성과 적시성

- ① 정시지급 원칙 준수
- ② 납품대금은 법령과 계약에 따라 기한 내 현금성 지급수단으로 지급
- ③ 어음 거래 지양
- ④ 거래 대금은 가급적 어음이 아닌 현금, 상생결제 시스템 등 안정 수단 활용

7. 상생협력 문화 조성

- ① 계약 체결 전 교육 및 가이드 제공
- ② 협력사가 계약조건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, 가이드라인 제공
- ③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
- ④ 불공정한 조항이 배제된 공정위 권장 표준계약서 또는 기업 자체 표준계약서 사용
- ⑤ 공동 R&D, 기술지원, 품질향상 활동 연계
- ⑥ 계약뿐 아니라 중장기적 협력을 위한 협력개발, 교육지원, 기술지도 등 병행

8. 부가 실천사항

본 실천사항은 모든 구매·계약 담당자가 준수해야 하며 협력사에도 고지되어야 한다.
연 1회 이상 내부 감사 및 점검을 통해 계약체결의 공정성을 관리한다.